

#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7월 1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 개정이유

- 2005. 12. 30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II. 주요골자

- 가. 위원회 목적 변경 (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 나. 위원회 기능 추가 (안 제2조)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심의
- 다. 위원회 회의 (안 제5조)
  -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

### III. 검토의견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지방기금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별 법률로 제정하는 등 지방재정법령이 전면 개편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 공시제도에 관하여 위 개정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불필요한 내용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로 개칭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추가하였는 바,

-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공개내용이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불리한 자료는 누락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었으나,

- 개정법령에서는 공개대상의 항목과 공시방법·절차 및 시기 등을 법령에 직접 명시하고(법 제60조,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시행령 제70조제1항) 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다만 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기능을 통합한 것은 업무의 연계성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되나, 관계전문가 보완 등 공시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안 제5조제2항에서 정기공시시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추가하였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정기공시는 매년 8월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년 2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며,

안 제5조제3항 단서규정 삭제는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2005.12)과 의사결정에 관한 일반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 IV.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전문개정 2005. 8. 4, 법률 제7663호)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전문개정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

제68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구 지방재정법(법률 제7159호)

第16條의2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 ①地方財政計劃의 수립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각 地方自治團體에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118條의3 (財政運營狀況의 公開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定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마다 1回 이상 歲入·歲出豫算의 집행상황, 地方債 및 一時借入金의 現在額, 公有財産의 증감 및 현황, 重要物品의 증감 및 現在額 기타 財政運營에 관한 重要사항을 住民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폐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로구의 재정 운영상황(이하 "재정 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1/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4분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생략)